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9. 7. 23. 개정 2010. 6. 29. 개정 2010. 12. 29. 개정 2013. 6. 11. 개정 2014. 9. 5. 개정 2015. 8. 31. 개정 2017. 8. 16. 개정 2017. 12. 20. 개정 2018. 7. 6. 개정 2020. 4. 24. 개정 2021. 3. 22. 개정 2022. 12. 22.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한다.<개정 2018. 7. 6., 2022. 12. 22.>
 - ② 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한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 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구성은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임직원과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6. 11., 2017. 8. 16.>
 - ⑤ 비상임이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진흥원의 직원을 대표하는 기구에서 선정한 1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31>

- ⑥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⑦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ㆍ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
- 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6.>
- ⑧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인(이하 '노동이사'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2. 12. 2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후보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 2. 후보자의 모집·심사·추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기타 후보자 추천 및 원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의 협의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0. 12. 29>

제7조(후보자의 자격요건) ① 원장 직위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1. 최고 경영자로서 인터넷 ·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자<개정 2017. 12. 20., 2021. 3. 22.>
- 2. 인터넷 ·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4.
- 9. 5., 2021. 3. 22.>
-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조직개혁 및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추진력을 보유한 자 <개정 2014. 9. 5., 2017. 12. 20.>
-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소유한 자<개정 2014. 9. 5., 2017. 12. 20>
- 5.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감각을 지니고 있는 자<개정 201
- 4. 9. 5., 2021. 3. 22.>
-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② 상임이사 직위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1.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4.
- 9. 5., 2021. 3. 22.>

2. 리더십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9. 5., 2021. 3. 22.>

- 3.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소유한 자<개정 2014. 9. 5., 2017. 12. 20>
- 4.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감각을 지니고 있는 자<개정 2014
-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③ 비상임이사 직위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에 대하여는 제7조의2를 적용한다.<신설 2017. 12. 20><개정 2022. 12. 22.>
- 1.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21. 3. 22.>
- 2.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소유한 자
- 4. 인터넷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감각을 지니고 있는 자<개정 2021.
- 3. 22.>
-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④ 비상임감사 직위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신설 2017. 12. 20>
- 1.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갖춘 자
-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소유한 자
- 3. 회계 및 감사 관련 업무 이해도가 높은 자
- 4.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이해수준이 높은자<개정 2021. 3. 22.>

제7조의2(노동이사의 자격) ① 노동이사는 진흥원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 ②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
-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 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본조 신설 2022. 12. 22.]

- 제8조(후보자의 모집) ① 위원회는 진흥원의 업무상황·성격·결원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에 의하여 모집한다. 다만, 원장 및 비상임이사 직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0.>
 - ②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 또는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 또는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

-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 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한다.
- ③ 후보자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진흥원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 2013. 6. 11., 2 017. 8. 16.>
- ④ 후보자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1., 2014. 9. 5., 2015. 8. 31., 2017. 8. 16.>
- ⑤ 추천방식에 의해 후보자를 모집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관련학계 및 단체·인사혁신처(국가인재DB)·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공개모집 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노동이사 후보자의 추천방식은 제8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5. 8. 31., 2017. 8. 16., 2022. 12. 22.>
- ⑥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의2(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및 동의절차) ① 위원회는 진흥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다음 각 호에 따른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정하여 야 한다.
 - 1. (근로자대표의 추천) 노동이사 임명을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는 2명의 임원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진흥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재적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2. 22.]

- 제9조(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심사) ① 위원회는 응모 또는 추천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으로 응모 또는 추천된 자의 경우 기관특성,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후보자 모집결과 응모 또는 추천된 자의 서류심사를 통해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원인원의 적정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모 또는 추천된 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 ④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등은 후보자의 지원, 심사, 선정, 평가 및 추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7. 12. 2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방식에 의해 모집된 노동이사 후보자의 경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고 제7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임명권자에게 노동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2.>
-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7. 12. 20.>
 -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 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2. 22.>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임원 후보자 심사 확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2.>
- 제11조(심사기준) ① 원장 후보자의 심사는 [별지 제1호] 심사평가표에 따른다.
 - ② 원장을 제외한 상임이사 후보자의 심사는 [별지 제2호] 심사평가표에 따른다.
 - ③ 비상임감사 후보자의 심사는 [별지 제3호] 심사평가표에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 후보자의 심사는 [별지 제3-1호] 심사평가표에 따른다.<신설 2017. 12. 20>
 - ⑤ 동점자는 심사기준 순위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개정 2017. 12. 20>
- 제12조(후보자 추천 및 임명절차) ①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3배수 내지 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무순위로 추천한다. 다만, 직위특성, 대상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다만, 노동이사 후보자는 2명을 추천한다.<개정 2022. 12. 22.>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장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여 원장이 임명,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비상임감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0. 12. 29., 2013. 6. 11., 2014. 9. 5., 2017. 8. 16., 2017. 12. 20., 2020. 4. 24.> ③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후보자 모집 시 추천자의 추천서(추천방식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시 추천방식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한한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별지제5호] 선발경과 요약서, [별지 제6호]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7호]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별지 제8호] 세부 추천사유를 작성하여 추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④ 위원회가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임기 중인 비상임이사와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가 응모 또는 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비상임감사 직위 후보자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추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2.>
-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 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 제13조(비상임이사 후보자 제외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할 수 없다.
 - 1. 진흥원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2. 진흥원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 3. 진흥원과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 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진흥원의 이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회의소집 등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
 - 2.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15조(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 및 관계자 등은 후보자의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 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보칙) 진흥원은 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9><개정 2013. 6. 11., 2017. 8. 16.>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 고시되기 이전에는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를 위원 회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2010. 6.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다만, 제3조제8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노동이사인 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개정 2014. 09. 05., 2017. 12. 20., 2021. 3. 22.>

원 장 후 보 자 심 사 평 가 표(서류심사)

□ 후보자 성명 :

			평		점	
심 사 기 준	배점	주 우 우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1.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비전제시능력 및 리더십 발휘	20					
C-7		20	16	12	8	4
2.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과 경험 수준 및 이해력	20					
[군국진 시국과 성임 구군 夫 이에크 		20	16	12	8	4
3. 조직관리 및 경영역랑을 바탕으로 한 조직개혁 추구 및 이에 대한 추진력	20					
		20	16	12	8	4
4. 청렴성 및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20					
		20	16	12	8	4
5.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국 제협력활동과 경험 정도	10					
		10	8	6	4	2
6. 관련분야 및 전문경영인 경력 또는 실적	10				4	
	400	10	8	6	4	2
합 계	100					

	20	년	월	일
심사위원_				(인)

원 장 후 보 자 심 사 평 가 표(면접심사)

□ 후보자 성명 :

				평		점	
	심 사 기 준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리더십	1. 중장기 기관 비전제시 및 전략수립 능력	10	10	8	6	4	2
(20점)	2. 조직 통솔력 및 리더로서의 역량	10	10	8	6	4	2
 전문성	1.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10					
(20점)	에 대한 경험과 지식수준 2. 현인에 대한 문제판단 능력 및 정책대안 제시능력	10	10	8	6	4	2
	 	10	10	8	6	4	2
조직관리	· 포크제크를 되한 러시 첫 푸만크	10	10	8	6	4	2
(20점)	2. 조직관리를 통한 경영성과 도출	10	10	8	6	4	2
윤리관	1. 최고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성 및 도덕성	10	10	8	6	4	2
(20점)	2. 공공기관으로서의 시회적 책임감 수행 의지	10	10	8	6	4	2
경력 (10점)	1. 괸련분야 근무 경력 또는 실적	10	10	8	6	4	2
국제화 (10점)	1. 국제협력 관련 활동 및 경험	10	10	8	6	4	2
	l 합 계	100	10	0		<u> + </u>	

 [별지 제2호] <개정 2014. 09. 05., 2017. 12. 20., 2021. 3. 22.>

상 임 이 사 후 보 자 심 사 평 가 표(서류심사)

□ 후보자 성명 :

			평		점	
심 사 기 준	배점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1.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수준 및 이해력	30	30	24	18	12	6
2. 리더십 및 조직관리 능력 등 전반적인 경영능력	25	25	20	15	10	5
3. 청렴성 및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25	25	20	15	10	5
4.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국 제협력활동 과 경험정도	10	10	8	6	4	2
5. 관련분야 근무 경력 또는 실적	10	10	8	6	4	2
합 계	100	10	<u> </u>	ı <u> </u>	1 7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상 임 이 사 후 보 자 심 사 평 가 표(면접심사)

□ 후보자 성명 :

				평		점	
	심 사 기 준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전문성	1.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험과 지식수준	15	15	12	9	6	3
(30점)	2. 현안에 대한 문제판단 능력 및 정책대안 제시능력	15	15	12	9	6	3
경영능력	1. 리더십기반 조직통솔력 및 전략제시	10	10	8	6	4	2
(20점)	2. 경영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직관리 능력 및 전략적 사고	10	10	8	6	4	2
윤리관	1.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성 및 도덕성	10	10	8	6	4	2
(20점)	2.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수행 의지	10	10	8	6	4	2
경력 (20 점)	1. 관련분야 근무 경력 또는 실적	20	20	16	12	8	4
국제화 (10점)	1. 국제협력 관련 활동 및 경험	10	10	8	6	4	2
	합 계	100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별지 제3호] <개정 2014. 12. 29., 2017. 12. 20., 2021. 3. 22.>

임 원(비상임 감사) 후 보 자 심 사 평 가 표

□ 후보자 성명 :

			평		점	
심 사 기 준	배점	주 우 우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1. 조직운영 및 기관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정도	25					
		25	20	15	10	5
2. 청렴성 및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25					
		25	20	15	10	5
3. 회계 및 감사 관련 경력과 업무 이해도	25	0.5			10	
		25	20	15	10	5
4.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이해수준	25					
		25	20	15	10	5
합 계	100					

	20	년	월	Q.
심사위원_				(인)

[별지 제3-1호] <신설 2017. 12. 20., 2021. 3. 22.>

임 원(비상임 이사) 후 보 자 심 사 평 가 표

□ 후보자 성명 :

			평		점	
심 사 기 준	배점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1.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수준 및 이해력	30					
		30	24	18	12	6
2.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수준	20					
		20	16	12	8	4
3. 청렴성 및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20					
		20	16	12	8	4
4. 인터넷·정보통신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국 제협력활동 과 경험정도	20					
		20	16	12	8	4
5. 관련분야 근무 경력 또는 실적	10					
		10	8	6	4	2
합 계			1(00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별지 제4호] 후보자 추천사유서 <삭제 2010. 12. 29>

[별지 제5호]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개요

가. ㅇㅇ직위(성명 :ㅇㅇㅇ)의 임기만료(200ㅇ.ㅇ.ㅇ)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0○.○.○(월)~○.○(금)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0○.○.○)
- 부/처/청/홈페이지(200○.○.○~○.○),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200○.○.○~○.○)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접수기간 : 200○.○.○부터 200○.○.○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부/처/청/홈페이지(200○.○.○~○.○),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200○.○.○~○.○) ※ 접수기간: 200○.○.○부터 200○.○.○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고
				공개모집
				추천

-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고
비상임이사				학계
비상임이사				경제계
비상임이사				언론계
이사회추천				노동계
이사회추천				법조계

[별지 제6호] 후보자 추천서 <신설 2010. 12. 29>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직위 후보자를 복수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비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〇〇〇 (서 명)

- 위 원 ○○○ (서 명)
- 위 원 ○○○ (서 명)
- 위 원 ○○○ (서 명)
- 위 원 ○○○ (서 명)

[별지 제7호]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신설 2010. 12. 29>

(예시)

성 명	출 생	학 력	주 요 경 력
(男)	강원 'ㅇㅇ.ㅇㅇ.ㅇㅇ	○○고 ○○대 ○○학과 ○○대 경제학박사	○○대 경제학과 교수(현) ○○전자 사외이사(현) ○○위원회 자문위원 ○○학회 회장
OOO (女)	서울 '○○.○○.○○	○○여고 ○○대 영문학과 ○○대 경제학석사	○○일보 편집국장(현) ○○일보 논설위원 ○○일보 경제부장 ○○공사 비상임이사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강원, 서울)
- * 생년월일은 '○○.○○.○○(예 : '50. 6.25)로 기재
-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女)로 표기
-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별지 제8호] 세부 추천사유 <신설 2010. 12. 29>

성 명	현 직	추천 사유
000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별지 제9호] 임원 후보자 심사 확약서 <신설 2017. 12. 20.><가정 2022. 12. 22.>

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OO후보자에 대한 제착·기피·회피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본 심사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고,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0OO년 O월 O일

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9-1호] 원장 후보자에 대한 회피 및 심사 확인 <신설 2017. 12. 20.>

연번	후보자	해당란에 "○" 표시		11.0
		확 약	회 피	사유
1	ㅇㅇㅇ대학교(ㅇㅇㅇ학과) ㅇㅇㅇ			회피사유
2				
3				
4				
5				
6				
7				
8				
9				
10				